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 시행으로 이용객 편의 증대 및 효율적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등 조례를 일제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사용료 징수방안 확대(안 제4조)

- 전자결제 시스템(신용카드) 도입

나.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7”로, “기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”를 “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시설사용료 :”를 ““시설사용료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 2호 중 “수입금 :”을 ““수입금”이란”으로, “현금,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”을 “금액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 3호가목 중 “매년 7월 및”을 “7월,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금요일 또는”을 “금요일,”로 하며,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공휴일의 전날. 이 경우 공휴일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”을 “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사용료 등은”을 “시설사용료는”으로, “인터넷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”를 “인터넷·폰뱅킹, 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시설사용료”로 한다.

제4조의2제1항 중 “사람은”을 “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사람은 예약 후”를 “자는 예약일로부터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경우

사용 전달까지 낼 수 있다”를 “자는 사용예정일 전달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민”을 “구미시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시설사용료”로 한다.

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변경”을 “사용시간을 변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그날”을 “사용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“그날 8시”를 “8시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이듬해”를 “다음 해”로, “그날 9시”를 “9시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요금 징수 및 게시)”를 “(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에 제4조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장 사용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시설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설 사용자”를 “시설사용자”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주차료를”를 각각 “주차장 사용료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를 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제6조제3항제14호 중 “휴양림내”를 “자연휴양림 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8조,제22조”를 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2조”로, “(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”를 “(해당 선거의

선거일로부터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사용료”를 “시설사용료”로, “30%”를 “3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인터넷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”을 “계좌이체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휴양림 시설사용”을 “자연휴양림 시설 사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필요할 때”를 “필요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·보수하는 경우

제10조제3호 중 “시설”을 “자연휴양림 시설”로, “예상될 때”를 “예상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사용자가 휴양림”을 “자연휴양림”으로, “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”를 “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가해자”를 “자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전체 밋”을 “전부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수입”을 “운영에 따른 수입금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전일 수입금은 익일”을 “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”로, “다음날)에”를 “다음 날)”로, “입금 하여야”를 “입금하여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한”을 “조례의 시행에 필요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의 규정</u> 에 따라 구미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, <u>기타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</u> ----- ----- 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<u>시설사용료</u> : 자연휴양림 내에 조성 및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. 2. <u>수입금</u> :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<u>현금,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</u> 을 말한다. 3. “성수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“비수기”란 성수기가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“ <u>시설사용료</u> 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. 2. “ <u>수입금</u> ”이란 ----- ----- <u>금액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3. ----- ----- -----

아닌 기간을 말한다.

가. 매년 7월 및 8월

나. 금요일 또는 토요일

다. 공휴일의 전날

제4조(시설사용료) ① 시장은 휴양
림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1의
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.

② 시설사용료 등은 현금(채신관
서 또는 「은행법」에 의하여
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
를 포함한다), 인터넷·폰뱅킹
및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하여 징
수할 수 있다.

③ 비수기의 경우 숲속의 집·
산림문화휴양관 성수기 사용료
에서 30퍼센트 할인된 요금을
적용한다.

④ ~ ⑥ 삭 제

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숲속의
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
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
예약하여야 하며, 숲속의 집·

-----.

가. 7월, -----

나. 금요일, -----

다. 공휴일의 전날. 이 경우
공휴일이란 「관공서의 공
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
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
체공휴일을 말한다.

제4조(시설사용료) ① --- 자연휴
양림 시설사용자로부터 별표 1
-----.

② 시설사용료는 -----

----- 인터넷·폰뱅킹,
무통장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
제 등의 방법으로 --.

③ -----
----- 시설사용
료-----
-----.

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-----

----- 자는 -----

산림문화휴양관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, 야영데크는 이용하려는 날의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.

②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 3일 이내에 예약한 경우 사용전날까지 낼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주민과 구분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.

⑤ 시장은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4조의3(시설의 사용시간)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.

-----.

② -----
----- 자는 예약일로부터 -----
-----.
----- 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구미시민-----

-----.

⑤ -----
----- 시설사용료 -----
-----.

제4조의3(시설의 사용시간) -----

----- 사용시간을 변경-----.

1. (생략)

2. 야영장 : 그날 13시부터 다음
날 13시까지

3. 일일개장 시간은 다음 각 목
과 같다.

가. 3월부터 10월까지 : 그날
8시부터 19시까지

나.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
: 그날 9시부터 18시까지

제5조(요금 징수 및 게시) ① 시설
사용료 등은 무통장 입금으로
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
주차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
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.

② (생략)

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 ①
(생략)

② 시장은 숲속의 집 및 산림문
화휴양관에 대하여 별표 1의2와
같이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
다.

③ 시설 사용자가 신분증과 함
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
를 제시하는 경우 7월 및 8월을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사용일 -----

3. -----
-----.

가. ----- 8시-----

나. ----- 다음 해 -----
- 9시-----

제5조(시설사용료 징수 및 게시)
① 시설사용료는 이용예정일 전
에 제4조제2항의 방법으로 납부
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장 사용
료 및 당일 사용일 경우에는 매
표소에서 징수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설사용료-----
-.

③ 시설사용자-----

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료를
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6호에
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료를
면제할 수 있다.

1. ~ 6. (생 략)

7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
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
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
유족

8. (생 략)
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
라 등록된 사람

10. ~ 13. (생 략)

14. 휴양림내의 동식물 조사·
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

15. · 16. (생 략)

17.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
률」 제8조, 제22조의 규정에
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
참여한 사람(당해 선거의 선
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)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(생 략)

----- 주차장 사
용료를 -----.

----- 주차장 사
용료를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
한 법률」 제7조-----

--

8. (현행과 같음)
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
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
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
람

10. ~ 13. (현행과 같음)

14. 자연휴양림 내-----

15. · 16. (현행과 같음)

17. -----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
률」 제22조-----

-----(해당 선거의 선거
일로부터 -----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(현행과 같
음)

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한 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%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.

③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8조(배상처리) ①·② (생략)

③환불은 인터넷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10조(시설사용 제한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

2. 휴양림 시설을 개·보수할 때

3. 천재지변,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시 현저한 위

② -----

시설사용료----- 30퍼센트
-----.

③ -- 각 호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배상처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 계좌이체 -----

-----.

제10조(시설사용 제한) --- 각 호

--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-----
-----.

1. -----

- 필요한 경우

2. 자연휴양림 시설을 개·보수하는 경우

3. -----
-- 자연휴양림 시설 -----

험이 <u>예상될 때</u> 제12조(손해배상 등) ① <u>사용자가 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, 훼손,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<u>가해자</u>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 제13조(위탁 관리·운영) ① <u>시장</u>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<u>전체 및 일부시설에</u> 대하여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②·③ (생략) 제14조(세입조치) 자연휴양림 <u>수입</u>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. 제15조(수입금 입금)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<u>전일 수입금</u>은 익일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	-- <u>예상되는 경우</u> 제12조(손해배상 등) ① <u>자연휴양림</u>----- ----- <u>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</u> ----- --. ② ----- ----- <u>자</u>----- -----. 제13조(위탁 관리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부 또는</u>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세입조치) ----- <u>운영</u> <u>에 따른 수입금</u>----- --. 제15조(수입금 입금) ----- ----- <u>당일 수입금은 다음</u> <u>날</u>-----
---	---

그 <u>다음날</u>)에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<u>입금 하여야</u> 한다. 제16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 시행에 관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- <u>다음 날</u>) ----- -- <u>입금하여야</u> -----. 제16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 시행에 필요한</u>-----.
--	---

관계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

소관 실·과		산 립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이 한 석
	담 당	양 재 영
	담 당 자	윤 혜 정 (480-5882)